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17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김용태 · 임종득 · 서천호
김성원 · 김선교 · 김승수
이종배 · 김대식 · 강명구
조정훈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

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기계 등의 보유 현황”을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유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0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 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 ⑱ (생략)

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㉑ · ㉒ (생략)

⑥ -----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

⑦ ~ ⑱ (현행과 같음)

㉑ -----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㉑ · ㉒ (현행과 같음)